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2016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차 례

I. 목 적	1
II. 근 거	1
III. 보조신청 및 정산요령	1
IV. 보조금의 산정기준	3
1. 기준재정수입액	3
2. 기준재정수요액	5
3.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13
V. 행정사항	14
[붙임1] 2016년도 재정결합보조금 산정 단가표 및 지급기준 ..	16
[붙임2] 표준운영비 산출 단가	23
[붙임3]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학교[승덕고] 지원 기준 ...	25
[붙임4] 각종학교[호남삼육학교] 지원 중단에 따른 지원 기준 ..	27
[붙임5] 보조금 신청 서식	29
[붙임6] 2015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50

2016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I 목 적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II 근 거

1.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3.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III 보조신청 및 정산요령

1. 보조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립 중·고·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단,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2. 보조제외 대상

- 사립초, 자율형사립고, 각종학교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 되어 있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미충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지원

3. 보조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 일반계고 전환학교 및 각종학교 기간별 지원 대상

대상 \ 보조기간	2016.1.1.-2016.2.29.	2016.3.1.-2016.12.31.	비 고
승덕고등학교	1학년(일반계고)	1, 2학년(일반계고)	
호남삼육학교	전체학년	2, 3학년	

4.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법인이 제출한 학교별 신청서에 따라 보조 여부를 판단 심사 후 연간 총액으로 보조를 결정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연간집행계획에 따라 월별 소요액을 보조대상 학교별로 매월 교부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5.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 사립 중(호남삼육학교 포함)·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조금은 교육감이 관리 및 지도·감독한다.
- 보조금은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운영비는 반드시 지원과목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산정 기준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보조금 정산은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연 2회(7월 중간정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 관할청에서 지정한 날 실시한다.
- 정산은 이 지원지침과 별도지침 등에 의한다.
- 관할청은 보조금의 신청내용, 정산내용 및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사용제한

- 관할청은 다음의 경우에 이미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가. 목적외의 사용
 - 나.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 라. 관할청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
 - 마.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불응한 때
 - 바.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거나 기타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IV 보조금 산정기준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다음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 **기준재정수요액(세출) - 기준재정수입액(세입) = 재정결함보조액**

기준재정수입액(A)	기준재정수요액(B)	재정결함보조금(B-A)
1. 입학금 2. 수업료 3. 법인전입금 4. 일정기준액(세입기준액의 6~7%)을 초과한 교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 기타 수입	1. 교직원 인건비 2. 법정부담금 3. 학교운영비	1. 연초 총액규모 산정 2. 격월(홀수월) 인건비 소요액 신청 3. 매월 교부

※ 세입기준액 반영율은 조정교부 시 확정 예정

1 기준재정수입액

가. 입학금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학교급별, 급지별 입학금 전액
 - 징수금액 : 2016년도 입학생수 × 2016년도 입학금
 - 징수율 : 감면대상자(법정면제자)를 제외한 잔여 신입생 100% 계상
- ※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

나. 수업료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학교급별, 급지별 수업료 전액
 - 2016년 1월~2016년 2월 : 2015학년도 수업료 월액×2015학년도 학생수×2월
 - 2016년 3월~2016년 12월 : 2016학년도 수업료 월액×2016학년도 예상 학생수×10월
- ※ 수업료는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으로 산정함 ⇒ 미납액은 정산시 인정하지 않음
- ※ 학생수는 면제자를 제외한 인원임

다. 법인전입금

-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이 원칙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액(100%) 부담하지 않고 타목적(시설투자비 등)을 위하여 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시 법정부담금을 전년도 부담액 이상 최우선 부담토록하고, 수익금 확대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법정부담금을 우선 전입하고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80/100이상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라. 순세계잉여금

- 2015 교비회계 결산 후 세입기준액의 6~7%를 초과한 순세계잉여금
 -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입액 = 순세계잉여금 - (세입기준액 × 6~7%)
- ※ 교비회계 결산 후 학교운영비 조정 시 세입기준액 반영률 확정하여 반영

교비회계 세입기준액 : ㉠ ~ ㉡의 합계액

- | | |
|---------------------|-------------|
| ㉠ 재정결함보조금 중 학교기본운영비 | ㉡ 목)학교운영지원비 |
| ㉢ 항)사용료및수수료 | ㉣ 항)자산수입 |
| ㉤ 항)기타행정활동수입 | ㉥ 항)순세계잉여금 |

재정결함 기준재정수입액 산입 [예시]

- ※ 세입 기준액의 6 ~ 7% 초과한 순세계잉여금 적용예시
 - 2015년도 학교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 세입기준액 : (위 ㉠~㉡ 총 합계액) 500,000천원
 - 결산 순세계잉여금 : 35,000천원
 -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입액 : 35,000천원 - (500,000천원 × 6~7%) = 0원 ~ 5,000천원
 - ☞ 2016년 재정결함보조금 기준재정수입액으로 0원 ~ 5,000천원 산입

마. 기타 수입

- 통학차량매각대금, 감사지적회수금(당해년도 1,2월분)

※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매각대(통학차량매각대금 제외), 이자수입은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

2

기준재정수요액

가. 교직원 인건비

□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1) 봉급[본봉]

-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교직원 호봉산정 : 해당연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연금부담금 불입 호봉 범위내 인정
- 신분 변동자는 연간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신규임용, 퇴직예정, 승진, 강임, 휴직, 징계, 호봉승급 등)

2) 제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세부 산정단가 : [붙임1-2 인건비] 참고

3) 성과상여금 : 별도 시행

- 교원 및 사무직원

□ 인건비 지원 기준

1) 교원

- 2015학년도('16.1월~2월) 및 2016학년도('16.3월~12월) 사립 중등·특수학교 교원 관리부서에서 배정한 교원 정원 범위내의 현원으로 계상한다. 단, 교원 정원 관리부서에서 별도 인정 시 예외
- 법인에서는 과원 발생 시 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여야 함.
 - ※ 교원 정원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인정한 계약제 교원은 현원으로 한다.
- 학교별 중기배치계획 상 학급 감축이 예상되는 학교는 결원 발생 시 계약제 교원을 최대한 활용
- 정원에 미달 또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수업 결손이 초래되는 학교는 관할청에 보고하여 계약제 교원 임용
- 계약제교원의 임용 및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청 해당부서의 지침에 의하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호봉이 낮은 자를 우선 임용

2) 사무직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배치 기준

- 사무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와 인건비 지원은 “2014년도 사립학교 재정 결함보조금 지원지침[붙임2]”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배치 기준에 의함.(정원 기준 변경 및 학급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원 및 직급상치 사무직원은 정년퇴직, 의원면직, 전출 등으로 자연 감소될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인건비 지원 - 법인에서는 과원 발생 시 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여야 함)

※ 향후 사무직원 관리부서의 사무직원 정원 기준 등 인사관리 지침 변경시 변경 지침에 의함.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무직원 대체 인력 인건비

- 사무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결원될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1개월 이하는 자체예산으로 임용

단, 사무직원 및 사무실무사 과원 학교는 대체인력 사용 불가[채용 시 인건비 미지원]

나.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산출되는 법인부담금 계상

다. 학교운영비

□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1)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text{학교운영비} = \text{표준운영비} + \text{통합사업비} + \text{가산금}$$

- 표준운영비 : 학교별로 총액으로 공통적으로 교부하는 경비
(표준교육비, 건물유지비, 전기요금 추가지원 등)
- 통합사업비 : 표준운영비 또는 가산금에 통합할 수는 없으나, 학교에 총액·배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비 및 인건비
- 가산금 :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경비

□ 학교운영비 교부기준

1) 표준운영비 교부기준

- 표준교육비 :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2005)』에 제시된 지수와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교당·학급당·학생당 경비를 산출하고 학교별로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
- 건물유지비 : 면적 1㎡당 경과연수에 따른 건물유지비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전액 교부하는 경비
 - 산식 : [기본 12,000천원 + (면적㎡ × 0.9천원 × 지수)]

건물연수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0년초과
지수	1	1.3	1.6	1.8	2.1

- 건물유지비 산정액 전액지원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시급한 학교시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유지 보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람.

○ 전기요금 추가 지원

(단위 : 천원)

학 급 수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급당 788	일반계 급당 993	급당 410
25학급 이상	급당 662	일반계 급당 836	
		전문계 급당 962	

- 전기요금 추가분은 실제 개별학교에서 소요되는 전년 대비 연간 전기요금 증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실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운영해야 함

2) 통합사업비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중·특수학교)

- 수학여행비 지원액
 - 특수학교(초등 6학년) : 1인당 100,000원
 - 중학교 2학년(특수학교는 중학부 3학년) : 1인당 150,000원
 - 특수학교(고등과정 2학년) : 1인당 120,000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전체학생 지원)
 - 중학교 : 전체학생수 × 1/3 × 50,000원
 - 특수학교(초·중·고과정 전체) : 6,000원×9개월(목적사업비 통합)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지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함
 - 대상학교 : 임곡중
 - 지원금 : 1,000천원

○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중·고·특수학교)

(단위 : 천원)

학 교 급	교당 지원액	학급당 지원액	비 고
중 학 교	3,000	150	
고등학교	3,000	50	
특수학교	3,000	50	

3) 특수학교 가산금

○ 차량운영비

구 분	은혜학교	광주세광학교	비 고
운행대수	8대 (대형5대, 임대 3대)	5대 (중형1대, 임대4대)	※ 차량 1대 : 2013.9.1.~ 임대 증차(광주세광학교)
차량 운영비	80,000천원 (16,000천원×5대)	12,000천원 (12,000천원×1대)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일체 포함
차량 임차비	143,910천원 (246천원×3대×195일)	144,300천원 (185천원×4대×195일)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받아야함 ·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통학보조원 인건비(처우개선비 별도)

- 기준 : 운행 차량 대당 1명
- 산정액 : 1인당 17,024천원
 - 인건비 : 1,501,900원 × 9.6개월 = 14,418,240원
 - 연차수당 : 53,000원 × 15일 = 795,000원
 - 각종 보험료 : 1,810,740원

구 분	은혜학교	광주세광학교	비 고
인원수	8명	5명	※처우개선비 및 퇴직적립금은 연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시 [서식기]에 따라 추가 지급 예정
인건비	136,192천원 (17,024천원×8명)	85,120천원 (17,024천원×5명)	

○ 은혜학교 수영장 관리비

- 산정액 : 15,000천원
 - 전기요금 : 200,000원 × 9개월 = 1,800,000원
 - 연 료 비 : 1,000,000원 × 9개월 = 9,000,000원
 - 상수도요금 : 500,000원 × 2개월 = 1,000,000원
 - 유지보수비 : 400,000원 × 8개월 = 3,200,000원

○ 은혜학교 운전원 인건비(처우개선비 별도)

- 산정액 : 19,881천원

· 인건비 : 1,877,370원 × 9.6개월 × 1명 = 18,022,750원

· 각종 보험료 : 1,858,220원

※ 통학보조원과 운전원 인건비는 2015년 기준단가 적용, 2016년 기준단가 변경시 추후 안내

○ 광주세광학교 전공과 실험실습비

- 산정액 : 학급당 3,600천원

과 정 명	학급수	전공과 실험실습비	비 고
이료재활전공과	1학급	3,600천원	
직업재활전공과	1학급	3,600천원	
계	2학급	7,200천원	

□ 학교급별 표준운영비 산출식

1) 산출식

○ 중학교

[[학급수별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급별·학급수별 적용율]+건물유지비+전기요금 추가지원액+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액+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 포함)인건비-조정액(표준교육비 3%,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고등학교

[[학급수별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급별·학급수별 적용율]+건물유지비+전기요금 추가지원액+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 - 학교운영지원비 중 운영비성 경비 - 조정액(표준교육비 3%,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특수학교

[[학급수별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급별·학급수별 적용율]+건물유지비+전기요금 추가지원액+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 - 조정액(표준교육비 3%)

○ 복합실업계 고등학교

- 교당경비 : 전체학급수에 대한 해당계열 교당경비를 해당계열 학급수로 나눈 각각 금액의 합계액
- 학급·학생당경비 : 해당계열의 해당금액을 곱하여 합한 금액
 $\{(학급수별\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생당경비)\times\text{급별}\cdot\text{학급수별\ 적용율}\}+$
 건물유지비+전기요금 추가지원액+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학교운영지원비
 중 운영비성 경비 - 조정액(표준교육비 3%,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학교운영지원비 중 운영비성 경비 산출 방법(고등학교만 해당)**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 (교원연구비+직책수당+관리수당+사무실무사인건비)

2) 학교급별 지원 적용률

○ 중학교 : 학급수에 따른 적용

학급수	12학급 이하	18학급 이하	24학급 이하	32학급 이하	36학급 이하	37학급 이상
적용률	65%	53%	51%	50%	48%	47%

○ 고등·특수학교 : 학급수·학교급에 따른 적용

학급수	일반계고					전문계고	
	12학급 이하	18학급 이하	24학급 이하	32학급 이하	33학급 이상	30학급 이하	31학급 이상
적용률	57%	52%	48%	47%	46%	39%	42%

학급수	상업계고			특수	
	24학급 이하	25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30학급 이상	40학급이하	41학급이상
적용률	43%	42%	41%	39%	37%

○ 복합계열 고등학교

- 서진여고(일반+상업) : 46%
- 승의고(일반+공업) : 46%
- 동일전자정보고(상업+공업) : 41%

3) 참고사항

○ 학생수 · 학급수 적용기준

- 2016년 1~2월분 : 중 · 고 · 특수(2015.12.1.통계자료)
- 2016년 3~12월분 : 2016-2020학년도 중기 학생수용계획 자료 활용

○ 조정교부

- 학생수 · 학급수 : 2016.4.1. 현재 기준으로 조정 교부 예정
- 학교운영지원비 :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초로 보전액 확정

□ 시기별 교부 비율

월	학교운영비 산출액(1 -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부율	10%	10%	20%	10%	10%	10%	5%	5%	10%	3%	3%	4%	100%

□ 2016년도 학교운영비 주요 변경사항

- 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표준교육비 3% 감액
- 전기요금 추가 지원 단가 변경
- 본청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매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입비 감액
(호남삼육학교 제외)

3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가. 인센티브

- 법정부담금 납부액(2015년 교비회계 결산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과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1) 전년대비 증가율

- 10 ~ 2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0.2%
- 21 ~ 3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0.4%
- 31 ~ 4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0.6%
- 41 ~ 5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0.8%
- 51 ~ 6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1.0%
- 61 ~ 7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1.2%
- 71 ~ 8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1.4%
- 81%이상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1.6%

2)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

- 1 ~ 5%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0.4%
- 6 ~ 1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0.8%
- 11 ~ 15%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1.2%
- 16 ~ 20%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1.6%
- 21 ~ 25%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2.0%
- 26%이상 증가 → 학교운영비(2015년 기준)의 2.4%

나. 패널티

-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불이익 부과
 -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율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고 지원
 [차감액=학교운영비(2015년 기준)×(1-법정부담금납부액/법정부담금기준액)×5%]

◆ **인센티브·패널티 부과 기준 학교운영비(1월~12월)**

[[학급수별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 × 학급수) + (학생당경비 × 학생수)] × 급별·학급수별 적용율]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지원액 +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 - (학교운영지원비 중 운영비성 경비) - 조정액(표준교육비 3%)

◆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2015회계연도(2015.3.1.~2016.2.29.)의 실적을 말하며, 인센티브 지원률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2년부터 고등학교만 적용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 가. 고등학교 학교장은 월별·분기별 수업료 징수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함. 향후 수업료 징수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조정할 계획이므로 수업료 징수방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나. 학교운영비 순세계잉여금이 일정 기준액 이상일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어 재정결함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학교운영비 적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함.
- 라.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시기 바람.
- 마. 인건비는 정산하고 운영비는 미정산하되, 인건비 정산 잔액(부족분제외)은 다음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고 인건비 항목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 인건비 소요판단 착오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 인건비 부족 및 정산잔액 과다 발생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2. 법정부담금 관련

- 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이 원칙임.
- 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타목적(시설투자비 등)을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
- 다. 법인회계 예산편성 시 법정부담금을 전년도 부담액 이상 최우선 부담토록 하고, 수익금 확대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3. 기타

가.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학교운영비 중 표준교육비 3%를 감액하여 지원 기준에 따라 총액 배분됨.

나. 본 지침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은 별도 시행 예정이다.

다. 학교법인은 **2016.01.07.(목)까지**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별 신청서[서식1~서식7]
- 사무직(사무실무사 포함) 업무분장표(원본대조필하여 스캔)

1 입학금 및 수업료

- 단가 : 2015학년도와 동일
- 입학금 : 공·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특성화고와 자율형 사립고 제외)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참조

(단위 : 원)

학교별	적용 지역 (급지별)		입학금	구분	수업료				적요
					공립		사립		
					비특성화	특성화	비특성화	특성화	
고등학교	1급지	가	17,200	연액	1,348,800	1,309,200	1,348,800	1,309,200	
				분기액	337,200	327,300	337,200	327,300	
				월액	112,400	109,100	112,400	109,100	
	나	14,800	연액		594,000				
			분기액		148,500				
			월액		49,500				
2급지 (나)		13,600	연액			1,104,000			
			분기액			276,000			
			월액			92,000			

1. 이 표에서 “특성화”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라 함은 특성화 이외의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고등학교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급지 (가) : 1급지(나)와 2급지(나)를 제외한 학교
 - 1급지 (나) :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전산고
 - 2급지 (나) : 광일고, 명진고(2013년 신입생부터는 1급지 가 지역 적용)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인건비

□ 봉급[본봉]

-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참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조[인사혁신처예규 제5호(2015.1.23.)]

□ 각종 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정근수당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 기준 지급률 적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연수</th> <th>1년 미만</th> <th>2년 미만</th> <th>3년 미만</th> <th>4년 미만</th> <th>5년 미만</th> <th>6년 미만</th> <th>7년 미만</th> <th>8년 미만</th> <th>9년 미만</th> <th>10년 미만</th> <th>1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지급률</td> <td>미지급</td> <td>5%</td> <td>10%</td> <td>15%</td> <td>20%</td> <td>25%</td> <td>30%</td> <td>35%</td> <td>40%</td> <td>45%</td> <td>50%</td> </tr> </tbody> </table>		근무 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급률	미지급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근무 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급률	미지급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지급시기 : 1월, 7월 보수지급일																												
정근수당 가 산 금	○ 월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근 무 연 수</th> <th colspan="2">월지급액(원)</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본</th> <th>추가가산금</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10년 이상 15년 미만</td> <td>60,000</td> <td></td> <td></td> </tr> <tr> <td>15년 이상 20년 미만</td> <td>80,000</td> <td></td> <td></td> </tr> <tr> <td>20년 이상 25년 미만</td> <td>100,000</td> <td>10,000</td> <td></td> </tr> <tr> <td>25년 이상</td> <td>100,000</td> <td>30,000</td> <td></td> </tr> </tbody> </table>		근 무 연 수	월지급액(원)		비 고	기본	추가가산금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20년 이상 25년 미만	100,000	10,000		25년 이상	100,000	30,000	
	근 무 연 수			월지급액(원)			비 고																					
			기본	추가가산금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20년 이상 25년 미만	100,000	10,000																										
25년 이상	100,000	30,000																										
대우공무원 수 당	○ 지급대상자 : 사무직원 중 대우직원으로 선발 보고된 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 월 지급액 : 월봉급액(기본급)의 4.1% 단,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액 : 배우자 40,000원, 기타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80,000원 추가 지급 (단, 2011.12.31.이전 출산한 셋째이후 자녀는 월3만원) ○ 지급인원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 부양가족의 범위 등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조 ※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녀학비 보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 고등학교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 ○ 학비의 범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 지급시기 : 2월(신입생 3월), 5월, 8월, 11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육아휴직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 만8세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자 ○ 월지급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 - 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 지급방법 - 육아휴직기간 중 :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빼고 남은 금액 지급 (단,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 지급) - 복직 후 :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조(인사혁신처예규 제5호(2015.1.2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기술정보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별표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목에 해당하는자 ○ 월지급액 · 5급 이상 : 50,000원 이하 · 6 - 7급 : 30,000원 이하 · 8급 이하 : 20,000원 이하 ○ 가산금 :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 지급 ·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교원보전수당	○ 지급대상 : 교장, 교감, <u>고등학교에 근무하는</u> 근속년수 5년 미만의 교원 ○ 월지급액 - 교장 : 월 70,000원 - 교감 : 월 10,000원 -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속년수 5년 미만의 교원 : 월 15,000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직수당	○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월지급액 : 250,000원 ○ 교직수당 가산금 <table border="1" data-bbox="347 846 1230 1854"> <thead> <tr> <th>구 분</th> <th>지급 대상자</th> <th>가산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가산금 1) (종전 교직수당가산금)</td> <td>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td> <td>월 50,000원</td> </tr> <tr> <td>가산금 2) (종전 보직교사수당)</td> <td>보직교사로 임용되어 관할청에 임용보고 수리된 자</td> <td>월 70,000원</td> </tr> <tr> <td>가산금 3) (종전 교원특별수당)</td> <td>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td> <td>월 70,000원</td> </tr> <tr> <td>가산금 4) (종전 담임수당)</td> <td>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 교사</td> <td>월 110,000원</td> </tr> <tr> <td>가산금 5) (종전 실과교원수당)</td> <td>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2호 다목 5에 해당하는 자</td> <td>(금액단위 : 원)</td> </tr> <tr> <td>호봉</td> <td>1~4</td> <td>5~8</td> <td>9~13</td> <td>14~21</td> <td>22~30</td> <td>31~40</td> </tr> <tr> <td>지급액</td> <td>25,000</td> <td>30,000</td> <td>35,000</td> <td>40,000</td> <td>45,000</td> <td>50,000</td> </tr> <tr> <td>가산금 6)</td> <td>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td> <td>월 30,000원</td> </tr> </tbody> </table> ※ 가산금 지급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음	구 분	지급 대상자	가산금액	가산금 1) (종전 교직수당가산금)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가산금 2) (종전 보직교사수당)	보직교사로 임용되어 관할청에 임용보고 수리된 자	월 70,000원	가산금 3) (종전 교원특별수당)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월 70,000원	가산금 4) (종전 담임수당)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 교사	월 110,000원	가산금 5) (종전 실과교원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2호 다목 5에 해당하는 자	(금액단위 : 원)	호봉	1~4	5~8	9~13	14~21	22~30	31~40	지급액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가산금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 분	지급 대상자	가산금액																																			
가산금 1) (종전 교직수당가산금)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가산금 2) (종전 보직교사수당)	보직교사로 임용되어 관할청에 임용보고 수리된 자	월 70,000원																																			
가산금 3) (종전 교원특별수당)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월 70,000원																																			
가산금 4) (종전 담임수당)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 교사	월 110,000원																																			
가산금 5) (종전 실과교원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2호 다목 5에 해당하는 자	(금액단위 : 원)																																			
호봉	1~4	5~8	9~13	14~21	22~30	31~40																															
지급액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가산금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시간외 근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 : 교원, 사무직원 중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자 ○지급단가(2015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감 및 교사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교 감</th> <th colspan="3">교 사</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30호봉 이상</th> <th>20-29호봉</th> <th>19호봉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단 가</td> <td>12,299</td> <td>11,512</td> <td>10,723</td> <td>9,654</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교 감	교 사			비 고	30호봉 이상	20-29호봉	19호봉 이하	단 가	12,299	11,512	10,723	9,654	
	구 분	교 감	교 사						비 고												
			30호봉 이상	20-29호봉	19호봉 이하																
	단 가	12,299	11,512	10,723	9,6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5 급</th> <th>6 급</th> <th>7 급</th> <th>8 급</th> <th>9 급</th> </tr> </thead> <tbody> <tr> <td>단 가</td> <td>12,113</td> <td>10,331</td> <td>9,332</td> <td>8,378</td> <td>7,573</td> </tr> </tbody> </table>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단 가	12,113	10,331	9,332	8,378	7,573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단 가	12,113	10,331	9,332	8,378	7,5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단가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 - 기준호봉 : 일반직 공무원(해당계급 상당 10호봉) 교감(25호봉), 30호봉이상(23호봉), 20호봉~29호봉(21호봉), 19호봉이하(18호봉) 																					
관리업무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정액분 : 현원×지급단가×10시간 추가분 : 자율학습지도에 따른 소관부서 지침 적용 · 일반직 및 기능직 : 정액분 : 현원×지급단가×10시간 추가분 : 지급단가×추가시간 ※ <u>초과근무 신청시 반드시 사전 승인 받는 등 학교장 책임하에 초과근무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 부당 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것</u>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을 정액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 공제,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로 합산하여 월간계산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정 액 급 식 비	○지급대상 : 교원 및 사무직(일반직 및 기능직) ○월지급액 : 130,000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명 절 휴 가 비	○지급대상 : 교원, 사무직원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지급기준일</th> <th>지 급 액</th> </tr> <tr> <td>설 날</td> <td>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td> </tr> <tr> <td>추 석</td> <td>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td> </tr> </table> ○지급일 :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연 가 보 상 비	○지급대상 : 사무직원 ○지급액 1. 6월 30일 기준 :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의 86%×1/30×5일] 2. 12월 31일 기준 :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 위의 1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직 급 보 조 비	○지급대상 : 교원, 사무직원 ○월지급액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급 별</th> <th>금 액</th> <th>급 별</th> <th>금 액</th> </tr> <tr> <td>교 장</td> <td>400,000</td> <td>7 급</td> <td>140,000</td> </tr> <tr> <td>교감, 5급</td> <td>250,000</td> <td>8, 9급</td> <td>105,000</td> </tr> <tr> <td>6 급</td> <td>155,000</td> <td></td> <td></td> </tr> </table>	급 별	금 액	급 별	금 액	교 장	400,000	7 급	140,000	교감, 5급	250,000	8, 9급	105,000	6 급	155,000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급 별	금 액	급 별	금 액															
교 장	400,000	7 급	140,000															
교감, 5급	250,000	8, 9급	105,000															
6 급	155,000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지침)에 의거 지급(추후 통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사무직원 대체인력 지원 : 사무직원의 출산휴가, 병가, 휴직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 및 부담금 지원
 -지원 단가 : 일당 49,370원(2015년 기준),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변경으로 단가 조정시 추후 안내
 - 지원기간 : 관련법 및 규정에 허용된 범위 내 기간
 - 지원사유 : 출산휴가, 병가, 휴직
 - 신청 및 지원방법 : 학급수 감축 등을 고려하여 정·현원 확인 후 대체인력 신청

※ 본 지침 시행 이후 변경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보수업무 처리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법정부담금**

구 분		산 정 기 준
연 금 부 담 금		<p>◆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분 : <u>개인부담금 합계액×4,117/7,000×12월</u> ◦ 사무직원분 : <u>개인부담금 합계액과 동액×12월</u> - 개인부담금 : <u>기준소득월액×8%</u>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기준소득월액} = \frac{\text{전년도 총 소득액(비과세 제외)}}{\text{전년도 소득 종사 기간의 총 일수}} \times 30\text{배} \times \text{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div>
재해보상 부 담 금		<p>◆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사무직원 : <u>개인부담금 합계액×454/10,000×12월</u>
건강보험	건강보험 부 담 금	<p>◆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u>보수월액×6.12%×30/100×12월</u> ◦ 사무직원 : <u>보수월액×6.12%×50/100×12월</u> ※ 보수월액 :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 담 금	<p>◆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 교원, 사무직원 ◦ 보험료 산정방법 : 월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법정부담금 산정방법 - 교원 : <u>건강보험료 × 6.55% × 30/100 × 12월</u> - 사무직원 : <u>건강보험료 × 6.55% × 50/100 × 12월</u>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6.12%

※ 법정부담금 산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반드시 포함

□ 계약제교원 등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은 '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 『www.4insure.or.kr』 등을 참조하여 2016년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

붙임2

표준운영비 산출단가

(단위 : 천원)

학급수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상업고	특수학교
6	228,891	267,458	437,127	387,509	330,064
7	236,877	277,967	469,876	398,056	340,390
8	244,864	288,475	502,625	408,604	350,734
9	252,850	298,984	535,374	419,151	361,078
10	260,836	309,493	568,123	429,698	371,422
11	268,823	320,001	600,872	440,246	381,766
12	276,809	330,510	633,621	450,793	392,110
13	284,796	341,019	666,370	461,341	402,454
14	292,782	351,528	699,119	471,888	412,798
15	299,769	362,037	731,868	482,436	423,142
16	307,755	372,546	764,617	492,983	433,486
17	315,742	383,055	797,366	503,531	443,830
18	323,728	393,564	830,115	514,078	454,174
19	331,715	404,073	862,864	524,626	464,518
20	339,701	414,582	895,613	535,173	474,862
21	347,688	425,091	928,362	545,721	485,206
22	355,674	435,600	961,111	556,268	495,550
23	363,661	446,109	993,860	566,816	505,894
24	371,647	456,618	1,026,609	577,363	516,238
25	379,634	467,127	1,059,358	587,911	526,582
26	387,620	477,636	1,092,107	598,458	536,926
27	395,607	488,145	1,124,856	609,006	547,270
28	403,593	498,654	1,157,605	619,553	557,614
29	411,580	509,163	1,190,354	630,101	567,958
30	419,566	519,672	1,223,103	640,648	578,302
31	427,553	530,181	1,255,852	651,196	588,646
32	435,539	540,690	1,288,601	661,743	598,990

(단위 : 천원)

학급수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상업고	특수학교
33	437,059	517,523	1,369,766	655,418	612,692
34	446,569	525,792	1,378,685	664,121	623,408
35	456,080	534,062	1,387,605	672,824	634,124
36	465,590	542,332	1,396,525	681,527	644,840
37	471,250	554,766	1,412,381	694,506	655,556
38	476,909	567,200	1,428,238	707,484	666,272
39	482,569	579,634	1,444,094	720,463	676,989
40	488,228	592,068	1,459,950	733,441	687,705
41	493,888	604,502	1,475,807	746,420	698,421
42	499,547	616,936	1,491,663	759,398	709,137
43	505,207	629,370	1,507,519	772,377	719,853
44	510,866	641,804	1,523,376	785,355	730,569
45	516,526	654,238	1,539,232	798,334	741,286
46	522,185	666,672	1,555,088	811,312	752,002
47	527,845	679,106	1,570,945	824,291	762,718
48	533,504	691,540	1,586,801	837,269	773,434
49	539,164	703,974	1,602,657	850,248	784,150
50	544,823	716,408	1,618,514	863,226	794,866
51	550,483	728,842	1,634,370	876,205	805,583
52	556,142	741,276	1,650,226	889,183	816,299
53	561,802	753,710	1,666,083	902,162	827,015
54	567,461	766,144	1,681,939	915,140	837,731

(단위 : 천원)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상업고	특수학교
학급 단위	4137.3	7864.3	8271.5	8438.3	2185.5
학생 단위	199.7	193.0	178.8	193.3	227.2

붙임3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학교[송덕고] 지원 기준**

1. 기준재정수입

가.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면제
- '16.1월~2월 : 2015학년도 일반고(1학년) 학생 수업료 월액×일반고 학생수×2월
- '16.3월~12월 : 2016학년도 일반고(1, 2학년) 학생 수업료 월액×일반고 학생수×10월

나. 법인전입금

- 교원 정원배정기준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 소속 교사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제외하고, 일반계고 소속 교사에 대한 법정부담금만 계상
- 교장, 교감, 보건교사 및 사무직원의 법정부담금은 '16.1월~2월 1/3, '16.3월~12월 2/3 계상

다. 기타 수입

- 세입기준액 6~7%를 초과한 학교운영비 이월액(순세계잉여금)

2. 기준재정수요

가. 교직원인건비

1) 교원

가) 정책기획관에서 통보하는 '정원 배정 기준'에 의한 자율형사립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계고('16.1월~2월 : 1학년, '16.3월~12월 : 1, 2학년) 소속 교원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함

※ 2016학년도 송덕고 일반계고 교원 정원배정 현황(예정)

학급수	교장	교감	교 사 (진로진학 1명포함)	별도정원 (보건교사)	계
20	1	1	40	1	43

나) 재정결함지원 대상(일반계고) 교원 인건비 계상

'16.1월~2월 : 교장, 교감, 보건교사 인건비의 1β+교수교과 일반고 1학년 교원(21명)의 인건비

'16.3월~12월 : 교장, 교감, 보건교사 인건비의 2β+교수교과 일반고 1, 2학년 교원(40명)의 인건비

☞ 1, 2학년 학급담임(20명) + 기타교사(21명, 학급담임의 1, 2학년 담당 교육시수가 높은 교사)

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교원(일반계 소속 교원)의 휴직 등 사유로 채용한 계약제 교원은 대상에 포함

2) 사무직원

재정결함지원 정원의 범위내에서 '16.1월~2월은 인건비 총액의 1/3, '16.3월~12월은 인건비 총액의 2/3 계상

나. 법정부담금

- '16.1월~2월 : 2015학년도 기준, 일반계고(1학년)
- '16.3월~12월 : 2016학년도 기준, 일반계고(1, 2학년)
- 재정결함지원 대상 교원(일반계고 소속 교원)의 법정부담금 계상
- 재정결함지원 대상 관리직(교장, 교감, 보건교사) 및 사무직원의 법정부담금 총액의 '16.1월~2월 1/3, '16.3월~12월 2/3 계상

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 '16.1월~2월 : 2015.12.1.기준 학급수,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한 학교운영비 총액에서 1학년(일반고) 학급수에 해당하는 학교운영비 지원
- '16.3월~12월 : 2016.4.1.기준 학급수,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한 학교운영비 총액에서 1, 2학년(일반고) 학급수에 해당하는 학교운영비 지원

3. 기타사항

- 이 지원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을 준용

붙임4 **각종학교[호남삼육학교] 지원 중단에 따른 지원 기준**

1. 기준재정수입

가. 법인전입금

- 교원 정원배정기준에 의한 '16.1월~2월은 소속 교사 전체, '16.3월~12월은 2, 3학년 소속 교사에 대한 법정부담금만 계상
- 교장, 교감, 보건교사 및 사무직원의 법정부담금은 '16.1월~2월 전체, '16.3월~12월 2/3 계상

나. 기타수입

- 세입기준액 6~7%를 초과한 학교운영비 이월액(순세계잉여금)

2. 기준재정수요

가. 교직원인건비

1) 교원

- 가) 정책기획관에서 통보하는 정원 배정 인원 범위 내 재정결함지원 대상 교원 ('16.1월~2월 전체 교원, '16.3월~12월 2, 3학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함
 ※ 2016학년도 호남삼육학교 2,3학년 교원 정원배정 현황(예정)

학급수	교감	교사 (진로진학 1명포함)	별도정원 (보건교사)	계
8	1	15	1	17

나) 재정결함지원 대상 교원 인건비 계상

- '16.1월~2월 : 교감의 인건비+교수교과 전체 교사(22명)의 인건비
 '16.3월~12월 : 교감 보건교사 인건비의 2/3+교수교과 2, 3학년 교사(15명)의 인건비
 ⇨ 2, 3학년 학급담임(8명) + 기타교사(7명, 학급담임외 2, 3학년 담당 교육사수가 높은 교사)

다) 재정결함지원 대상 교사의 휴직 등 사유로 채용한 계약제 교원은 대상에 포함

2) 사무직원

재정결함지원 정원의 범위내에서 '16.1월~2월은 인건비 총액, '16.3월~12월은 인건비 총액의 2/3 계상

나. 법정부담금

- '16.1월~2월 : 2015학년도 기준, 전체학생
- '16.3월~12월 : 2016학년도 기준, 2,3학년 학생
- 재정결함지원 대상 교원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법정부담금 계상
- 재정결함지원 대상 관리직(교장, 교감, 보건교사) 및 사무직원은 '16.1월~2월 법정부담금 총액, '16.3월~12월 법정부담금 총액의 2/3을 계상

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 '16.1월~2월 : 2015.12.1.기준 학급수,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한 학교운영비 지원
- '16.3월~12월 : 2016.4.1.기준 학급수,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한 학교운영비 총액에서 2, 3학년 학급수에 해당하는 학교운영비 지원

3. 기타사항

- 이 지원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을 준용

붙임5

보조금 신청 서식

[서식 1]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서식 2]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조서

[서식 3]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출내역

[서식 4] 법정부담금 산출내역

[서식 5] 건물유지비 산출내역

[서식 6] 학교 건물 배치도

[서식 7]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산출 자료(특수학교만 해당)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1. 신청기관

- 가. 법인명 :
- 나. 학교명 : ○○학교
- 다. 학교장(성명) :
- 라. 주소(학교) : 광주광역시 ○○구 ○○로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가. 목적 : 2016년도 ○○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 도모
- 나. 내용 : 2016년도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부족액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기준재정수입액(A)	기준재정수요액(B)	보조금 신청액(결함액) (C=B-A)

4. 보조사업의 착수일과 완료예정일

- 가. 착 수 일 : 2016. 01. 01.
- 나. 완료예정일 : 2016. 12. 31.

5. 기타사항

※ 붙임 : 재정결함보조금 산출내역

2016. 01. .

○○○ 학교장 (직인, 서명)

학교법인 ○○○ 이사장 (직인, 서명)

※서명은 성명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조서

1. 학 교 명 :

2. 일반현황

가. 총 괄

(단위 : 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 학급수, 학생수 기준일 : 2015년도(2015.12.01.현재), 2016년도(2016.04.01.현재)

※ 교원, 사무직원 기준일 : 2015년도(2015.12.31.현재), 2016년도(2016.03.02.현재)

나. 학급 및 학생수

(단위 : 명)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학급수												
학생수												

※기준일 : 2015년도(2015.12.01.현재), 2016년도(2016.04.01.현재)

다. 교원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a)	2016 (b)	증감 (b-a)	2016년도					
				교 원 (가)				기간제(나)	합 계 (가+나)
				교장	교감	교사	계	정원내	
정 원							0		0
현 원							0		0
과부족							0		0

※기준일 : 2015년도(2015.12.31.현재), 2016년도(2016.03.02.현재) 교장·교감이 포함된 교원 전체 정원임

3. 재정상황

(단위 : 천원)

수입액(a)		수요액(b)		보조금지원 (c=b-a)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입 학 금		교원인건비 (정원내·외기간제교사 포함)		
수 업 료		사무직원인건비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계(a)		계(b)		

4. 2016년도에 교부 받고자 하는 재정결함보조금액

(단위 : 천원)

기준재정수입액(a)	기준재정수요액(b)	재정결함보조금(c=b-a)

작성자 직 행정실장 성명 (서명)
 확인자 직 교 장 성명 (서명)

 서식 3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출내역

1. 기준재정수입액

(단위 : 천원)

구 분	산정액	산 출 기 초(원)
입 학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입학생수×2016년도 단가 · 고등학교 : 특성화고, 자사고만 해당
수 업 료	2016.1월 ~ 20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학년도 수업료 월액 × 학생수 × 2월 ○ 2016학년도 수업료 월액 × 학생수 × 10월 ※ 학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학년도는 2016.01.01일 학생수 - 2016학년도는 2016.03.02일 학생수
법인전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시 법정부담금을 전년도 부담액 이상 최우선 계상하여야 함.
합 계	0	

2. 기준재정수요액

가. 교직원 인건비

(1) 2016년도 인건비 지급예정조서 총괄(1월~12월)

(단위 : 천원)

구분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포함)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교원									
정원내 기간제									
정원외 기간제									
사무직									
합계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교원(정규), 기간제, 사무직원 순으로 작성하되, 직급(직책)을 감안하여 고호봉순으로 작성
- ② 교원 및 사무직원 정원에 따라 정기승급분(매월)을 감안하여 계상
- ③ “개인별 인건비 지급예정조서”작성 시 정원내 미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홍길동①, 홍길동② 등으로 표시

☞ 성과상여금은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예산 산출에서 제외할 것

(2) 교원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형 작성)

(단위 :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포함)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계											

(3) 기간제교원(정원내)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형 작성)

(단위 :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포함)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계											

(4) 기간제교원(정원외)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형 작성)

(단위 :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포함)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계											

(5) 사무직원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형 작성)

(단위 :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포함)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계											

(5) 교직원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A4종 작성)

※ 교원 인건비 산출내역 작성시 정원내·외 기간제교사 포함하여 작성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원)
	교 원	사무직	계	
본 봉(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 사무직원 :
정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분 실소요액 : · 7월분 실소요액 : ◦ 사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분 실소요액 : · 7월분 실소요액 :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가산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이상 근무자 - 130,000원 × 명 × 12월 =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0,000원 × 명 × 12월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명 × 12월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명 × 12월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명 × 12월 = ◦ 사무직(일반직 및 기능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이상 근무자 - 130,000원 × 명 × 12월 =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0,000원 × 명 × 12월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명 × 12월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명 × 12월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명 × 12월 =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원)
	교원	사무직	계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배우자 인원 40,000원 × 12월= · 기타부양가족 인원 20,000원 × 명 × 12월= · 가족수당 가산금 30,000원 × 명 × 12월= ◦ 사무직 · 배우자 인원 40,000원 × 12월= · 기타부양가족 인원 20,000원 × 명 × 12월= · 가족수당 가산금 30,000원 × 명 × 12월=
자녀 학비 보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고등학교 ()금지 원 × 명 × 4기= ◦ 사무직 · 고등학교 ()금지 원 × 명 × 4기=
교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250,000원 × 명 × 12월=
교직수당 가산금 1) (종전교직수당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50,000원 × 명 × 12월=
교직수당 가산금 2) (종전 보직교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70,000원 × 명 × 12월=
교직수당 가산금 3) (종전 교원특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70,000원 × 명 × 12월=
교직수당 가산금 4) (종전 담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110,000원 × 명 × 12월=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원)
	교 원	사무직	계	
교직수당 가산금 5) (종전실과교원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1~4호봉 : 25,000원× 명× 12월= · 5~8호봉 : 30,000원× 명× 12월= · 9~13호봉 : 35,000원× 명× 12월= · 14~21호봉 : 40,000원× 명× 12월= · 22~30호봉 : 45,000원× 명× 12월= · 31~40호봉 : 50,000원× 명× 12월=
교직수당 가산금 6) (보건활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30,000원× 명× 12월=
대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 급 호, 원× 명× 12월= ◦ 기능직 · 급 호, 원× 명× 12월=
성과상여수당				※ 별도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
교원보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 70,000원 * 12월= ◦ 교감 : 10,000원 * 12월= ◦ 교원 : 5년미만 근무자(고등만해당) · 15,000원× 명× 12월=
기술정보수당				◦ 사무직 : 직급별, 단가로 구분 원× 명× 12월=
육아휴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월봉금액의 40%× 명× 〇월= ◦ 사무직 · 월봉금액의 40%× 명× 〇월=
관리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월 본봉× 12월× 7.8%=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원)
	교 원	사무직	계	
시 간 외 근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호봉별, 직급별, 단가로 구분 원 × 명 × 시간 × 12월 = ◦ 사무직 : 직급별, 단가로 구분 원 × 명 × 시간 × 12월 =
정액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130,000원 × 명 × 12월 = ◦ 사무직 · 130,000원 × 명 × 12월 =
명절휴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설) : 당해 월봉급액 × 60% = · (추석) : 당해 월봉급액 × 60% = ◦ 사무직 · (설) : 당해 월봉급액 × 60% = · (추석) : 당해 월봉급액 × 60% =
연가보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 2016년 6월, 12월 봉급액 × 86% × 1/30 =
직급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교장 400,000원 × 명 × 12월 = · 교감 250,000원 × 명 × 12월 = ◦ 사무직 · 5급 250,000원 × 명 × 12월 = · 6급 155,000원 × 명 × 12월 = · 7급 140,000원 × 명 × 12월 = · 8급 105,000원 × 명 × 12월 = · 9급 105,000원 × 명 × 12월 =
수당소계(2)				
인건비합계 =(1)+(2)				

(6) 기간제교원 운용 현황 및 인건비 소요액

연번	직위	성명	임용기간	호봉	소요액(천원)	임용사유

※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정원내·외 기간제교원 전체 기입(정원내 시간강사 포함)
- 임용사유 : 정원내·외 기간제교원을 구분 표기하고, 정원의 기간제교원일 경우 결원보충, 분만대체, 병가대체, 휴직 등으로 표기
- 임용기간 : 1년 이내(기간제교원은 관할청에 보고 수리된 임용 현황에 따라 인정)
- 퇴직금 :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산정

(7) 교직원 정년퇴직(예정)자 내역

연번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예정)일	비고

※ 대상 : 교원, 사무직원

(8) 사무직원 정·현원 현황

학교급별	학급수	정원(a)	현원(b)	과원(c=a-b)
	2015학년 ()			
	2016학년 ()			

※ 학교급별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 표기

▣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대상자 및 소요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직	성명	임용기간	호봉	소요액(연간)	비고
						호봉제
						월급제
계						

※소요액(연간)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

나. 법정부담금

※ 교원 법정부담금 산출내역 작성시 정원내·외 기간제교사 포함하여 작성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원)
	교 원	사무직	계	
연 금 부 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개인부담금 합계액)×4,117/7,000×12월= ◦ 사무직 · (개인부담금 합계액)×12월= ※ 개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text{기준소득월액} = \frac{\text{전년도 총 소득액 (비과세 제외)}}{\text{전년도 소득 총사 기간의 총 일수}} \times 30\text{배} \times \text{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div>
재해보상 부 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개인부담금 합계액)×454/10,000×12월= ◦ 사무직 · (개인부담금 합계액)×454/10,000×12월=
건 강 보 험	건강보험 부 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보수월액)×6.12%×30/100×12월= ◦ 사무직 · (보수월액)×6.12%×30/100×12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 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 건강보험료×6.55%×30/100×12월= ◦ 사무직 · 건강보험료×6.55%×30/100×12월=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6.12%
	계			
합 계(3)				

다. 학교운영비

○ 학교운영비 산출기초(중학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2016.1월~2016.12월)	산출액	비 고
표 준 운 영 비	학교당경비	()학급		2016.1~2016.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15.12.1일자 기준)
	학급당경비	()학급		
	학생당경비	()명		
	계			
	학교급별 비율적용(a) ()%			
	$a'=a \times 2\text{월}/12\text{월}$			
	학교당경비	()학급		2016.3~2016.1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16.3.2일자 기준) ※추후 4.1일자 기준으로 변경 교부
	학급당경비	()학급		
	학생당경비	()명		
	계			
	학교급별 비율적용(b) ()%			
	$b'=b \times 10\text{월}/12\text{월}$			
	$A=a'+b'$			
	건물유지비(B)			
교원연구비(C)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 포함) 인건비(D)				2016.정원기준()명
합 계(E=A+B+C+D)				
전기요금 추가 지원(F)				
교육력제고사업비(G)				
소프트웨어구입비(H)				
총 계(I=E+F+G-H)				
학교운영비 교부 요청액				총계(I)금액

○ 학교운영비 산출기초(고등학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2016.1월~2016.12월)	산출액	비 고
표 준 운 영 비	학교당경비	()학급		2016.1~2016.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15.12.1일자 기준)
	학급당경비	()학급		
	학생당경비	()명		
	계			
	학교급별 비율적용(a) ()%			
	$a'=a \times 2\text{월}/12\text{월}$			
	학교당경비	()학급		2016.3~2016.1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16.3.2일자 기준) ※추후 4.1일자 기준으로 변경 교부
	학급당경비	()학급		
	학생당경비	()명		
	계			
	학교급별 비율적용(b) ()%			
	$b'=b \times 10\text{월}/12\text{월}$			
$A=a'+b'$				
건물유지비(B)				
학교 운영 지원 비	회비수입(c)			
	교원연구비(d)			
	제수당(e)			
	사무실무사(구육성회직 포함) 인건비(f)			2016.정원기준()명
	계(C=c-d-e-f)			
합 계(D=A+B-C)				
전기요금 추가 지원(E)				
교육력제고사업비(F)				
소프트웨어 구입비(G)				
총 계(H=D+E+F-G)				
학교운영비 교부 요청액				총계(H)금액

☞ 「학교운영지원비」는 2015회계연도 학교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 학교운영비 산출기초(특수학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2016.1월~2016.12월)	산출액	비 고
표 준 운 영 비	학교당경비	()학급		2016.1~2016.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15.12.1일자 기준)
	학급당경비	()학급		
	학생당경비	()명		
	계			
	학교급별 비율적용(a) ()%			
	$a'=a \times 2\text{월}/12\text{월}$			
	학교당경비	()학급		2016.3~2016.1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16.3.2일자 기준) ※추후 4.1일자 기준으로 변경 교부
	학급당경비	()학급		
	학생당경비	()명		
	계			
	학교급별 비율적용(b) ()%			
	$b'=b \times 10\text{월}/12\text{월}$			
	$A=a'+b'$			
	건물유지비(B)			
교원연구비(C)				
추가 가산 금 (특수 학교)	차량운영비			차량임차일수 ()일 ※증빙서류(기안) 첨부
	통학보조원인건비			통학보조원 처우개선비 내역 제출(서식8)
	계(D)			
전기요금 추가 지원(E)				
교육력제고사업비(F)				
총 계 (G = A+B+C+D+E+F)				
학교운영비 교부 요청액				총계(G)금액

법정부담금 전출내역

학교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예정)			비 고
	기준액(a)	부담액(b)	부담률 (b/a)	기준액(a)	부담액(b)	부담률 (b/a)	
연 금 부 담 금							
재해보상 부 담 금							
건강보험 부 담 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포함)							
합 계							

☞ 서식 5

건물유지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동별 번호	건물명	건물 (m ²)	건축년도 (경과년수)	지수	건물유지비	산출내역	증감현황
1	<예시> 본관동	3,128m ²	2005 (11)	1.6	.	.	
2	생활관	770m ²	2006 (10)	.	.	.	전년대비 250m ² (+) (3층 증축)
3	강당	2,115m ²	2006 (10)	.	.	.	
4	기숙사	1,001m ²	2006 (10)	.	.	.	
5	
합계		10,250m ²		1.6	23,993	[12,000,000원+(10,250m ² ×900원)×1.6]=26,760,000원	

☞ 작성요령

- 총건물의 면적합계에 본관동의 경과년수에 따른 지수로 건물유지비 계산
- 산출내역 : [기본 12,000천원 + (면적m² × 0.9천원 × 지수)]

건물연수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0년초과
지수	1	1.3	1.6	1.8	2.1

- 동별번호는 학교건물배치도의 동별번호를 기입할 것
- 경과년수는 당해건물의 실시 경과년수를 기입하되 같은 동에 경과년수가 서로 다른 건물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작성
- 증감이 있는 건물은 증감현황에 증감면적 및 내역 표기
- 동일건물을 중·고 공동사용시 **중학교 전용사용분은 중학교에** 계상하고, **중·고 겸용 사용분은 고등학교에** 계상
- 교육기본재산 중 모든 건물을 포함하여 작성
-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되, 층별로 구분

※ 첨부서류 : 학교재해복구제대상건물가입증 사본

학교 건물 배치도

○○학교 건물배치

※중학교 전용사용분 (), 중·고 겸용 사용분 (): 해당란에 “○”표

서식7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산출 자료(특수학교만 해당)

1. 통학보조원 처우개선 수당 및 퇴직적립금 내역(2016.1.~2016.12.)

(단위 : 천원)

성명	명절 휴가비	교통 보조비	가족 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보육 수당	정액 급식비	퇴직 적립금	계
합계								

2. 통학버스 차량현황 및 차량비 집행내역(2015년도)

(단위 :천원)

학교명	교부액	차 량 현 황						집 행 내 역				집행액 합계
		직영	임대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차량 형태	연료 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임대료	
합계												

3. 통학보조원 인건비 정산(2015년도)

학교명	교부액	세부내역	지출액	비 고
		인건비		
		연차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처우개선수당		
		...		
		...		
		퇴직금		
		합 계		

구 분	주요 변경 사항
Ⅲ. 보조신청 및 정산요령	
1. 보조대상 2. 보조제외 대상	○ 보조 대상 및 보조제외 대상 명확화
Ⅳ. 보조금 산정기준	
1. 기준재정수입액	○ 입학금 면제 대상 추가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제3조⑥항 제2조제4호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기준액 반영률 조정
2. 기준재정수요액	○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직과 사무실무사 정원 연계 관리 - 사무직원 및 사무실무사 과원 학교는 사무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미지원 ○ 학교운영비 - 전기요금 추가 지원 단가 변경 - 업무용소프트웨어 교육청 일괄 구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감액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 수학여행비 : 특수학교(고등과정 2학년)지원대상 추가 - 현장체험학습비 :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비 학교운영비로 통합 ○ 시각장애학생의 직업재활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과 실험실습비 지원 - 광주세광학교 : 학급당 3,600천원
Ⅴ. 행정사항	
3. 기타	○ 사무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사무직(사무실무사 포함) 업무분장표 제출